



종로

종로구보

◇ 전 화 : 2148-1677

제1471호 2019. 5. 17.(금)

1.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2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【공 고】

- 제2019-549호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
위한 공람공고 1
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,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.

D-3 접수



D-2 편집



D-1 인쇄



D일 보급

기관의 장	
선 람	

70 합								

공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549호

**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26호(2006.04.13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-47호(2009.07.24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0-54호(10.09.24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16호(2014.02.14.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86호(2014.10.02.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113호(2014.11.21.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-31호(2015.03.20.), 종로구 도시개발과-11371호(2015.10.15.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-115호(2015.10.23.),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-2437호(16.03.08),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-10166호(16.09.29),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-13476호(16.12.29),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-743호(17.01.19),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-6780호(17.06.22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-68호(2018.7.2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변경인가를 위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및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17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- 공람기간 : 2019. 5. 17. ~ 2019. 5. 31.(14일)
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2148-2692)
-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계획(안)
 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- 사업의 명칭 :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 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128개월(변경 전)
 - 사업시행인가일: 2009. 7. 20.
 -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대
 - 면 적 : 152.193.4㎡(존치 : 7,718.6㎡ 포함)
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사업시행자 : 동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현영
 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, 401호(교북동, 부귀빌딩)
 - 변경내용 및 사유(이 외 변경사항 없음)
 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~ 128개월 →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~ 178개월
 - 변경사유 : 교통순찰대 및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등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
 - 기타 관계도서(생략)
 -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2148-2692)에 비치. 끝.